

## 약관 및 투자설명서 변경 수시공시

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122 조(수시공시) 및 신탁약관 제 51 조(수익자에 대한 공고등)에 따라 약관 및 투자설명서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공시합니다.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Tops JAPAN 재간접투자신탁 1 호

2. 시행일 : 2008. 1. 28.

### 3. 신탁약관 변경 주요 내용

◇ 변경 사유 : 투자대상 추가(해외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추가)

변경 전 신탁약관 내용	변경 후 신탁약관 내용
<p><b>제 36 조(투자대상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~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6.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 금리선물, 통안증권금리선물,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및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선물 및 통화옵션(이하 “<u>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</u>”이라 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7.~8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	<p><b>제 36 조(투자대상등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~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6. <u>해외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</u>,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CD 금리선물, 통안증권금리선물,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및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통화선물 및 통화옵션(이하 “<u>주식,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</u>”이라 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7.~8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 37 조(투자한도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1.~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6. <u>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</u>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이하가 되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(생략)</p>	<p><b>37 조(투자한도)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1.~5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6. <u>주식,채권및통화관련장내파생상품</u>의 거래는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5%이하가 되도록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부칙 신설&gt;</p>	<p><b>부 칙</b>                      (시행일) 이 신탁약관은 2008 년 1 월 28 일 부터 시행한다.</p>